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진설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환경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오염원인 등으로 피해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중앙 및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위원회 수당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출석 및 관계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변경(안 제3조)

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→ 별표의 기준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환경 분쟁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환경오염원인 등으로 피해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낮은 전문가 수당의 지급으로 위원 및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앙

및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된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」 제7조(수당 등)에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와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안 제3조의 재정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은 가능함.
- 현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수당(참석 및 안전검토수당) 100천원, 전문가수당(현지조사 및 자문수당) 130천원으로 중앙 및 전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과 비교하여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수당 180천원, 전문가수당 400천원이며, 전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균은 재정위원 수당 198천원, 전문가수당 367천원으로, 우리도 수당지급액이 중앙 및 타시·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안 별표의 재정위원수당 150천원과 전문가 수당 350천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중앙과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환경피해에 대한 복잡한 분쟁사건의 증가와 다양한 환경오염원인 등으로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에는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낮은 전문가 수당의 지급으로 재정위원 및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다중성을 띤 환경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및 타시·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액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